제323 남양주시의회 임시회
제 1 차 문 화 복 지 위 원 회

202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
(콘텐츠기업 특례보증)

검 토 보 고 서

2026. 10. 30

문화복지위원회

전문위원 조 공 선

202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
(콘텐츠기업 특례보증)

1. 제안경과

○ 본 동의안은 2026년 10월 2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1일 문화복지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임

2. 제안이유

○ 2027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하여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제3항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추진근거

- 「지방재정법」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
-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3조(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
- 「남양주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」제3조(시장의 책무)
- 경기도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금융지원 업무협약(2019.1.22.)

나. 출연기관 : 경기신용보증재단

다. 출연금액 : 10,000천원 (사업종료 2027년 6월)

- 특례보증규모 : 200,000천원

⇒ 산출근거 : [10,000천원(시 50%) + 10,000천원(도 50%)] × 10배* = 200,000천원

(10배* :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도와 시·군 출연액의 10배까지 보증)

라. 출연 현황

(단위: 천원)

구분	출 연 현 황									비고
	계	'19년	'20년	'21년	'22년	'23년	'24년	'25년	'26년	
특례보증규모 (출연금 총액의 10배)	**2,500,000**	1,000,000	-	-	-	500,000	-	500,000	500,000	先 출연 後 지원
출연금 총액	**250,000**	100,000	-	-	-	50,000	-	50,000	50,000	
市 출연	**125,000**	50,000	-	-	-	25,000	-	25,000	25,000	
道 출연	**125,000**	50,000	-	-	-	25,000	-	25,000	25,000	

- 지원실적 : 64건, 2,392,000천원 보증 ☞ 보증 한도의 95.7% 소진 (19년~26.8월말)
- 관내 콘텐츠산업 기업 지원현황

구 분	합계	출판	만화	애니메이션	영화	방송	음악	게임	광고	캐릭터	솔루션
지원기업	64	5	1	-	14	5	-	-	34	-	5

마.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주요내용

구 분	내 용 (협약)
기관별 역할	· 경기도 : 특례보증 지원을 위해 재단에 특별 출연(출연비율 50%) · 시·군 : 특례보증 지원을 위해 재단에 특별 출연(출연비율 50%) · 경기신용보증재단 : 특례보증 홍보, 특례보증 지원 · 경기콘텐츠진흥원 : 평가위원회 구성, 콘텐츠 기업 자문 정보 제공, 경쟁력 강화 지원
지원규모	- 도와 시군이 출연한 출연금의 10배
출연방식	- 先 출연(일시 지급) 後 기업 지원
지원한도	- 업체당 최대 5억원 (보증기간 5년)
지원절차	- 1억원 이하 : 상담→서류접수→보증심사→보증서 발급 - 1억원 이상 : 상담→서류접수→평가위원회→보증심사→보증서 발급
참여시군 (25개)	- 고양, 광명, 광주, 구리, 군포, 김포, **남양주**, 부천, 성남, 수원, 시흥, 안산, 안양, 양평, 여주, 연천, 용인, 의왕, 의정부, 이천, 파주, 평택, 포천, 하남, 화성
콘텐츠산업 분야	- 출판, 만화, 애니메이션, 영화, 방송, 음악, 게임, 광고, 캐릭터, 솔루션

4. 참고사항

가. 참고자료 : 붙임

나. 관련부서 : 문화예술과

5. 검토의견

○ 본 안건은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콘텐츠기업의 특례보증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(콘텐츠기업)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,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임.

○ 2027년 6월 사업종료 예정이고 2027년도 출연금은 10,000천원이며, 특례보증 규모는 경기도와 우리시 출연액 합계의 10배인 200,000 천원임.

○ 검토 결과, 본 출연을 통해 관내 콘텐츠 기업의 자금 조달 여건 개선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절차나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붙임 남양주시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현황(64건)

(단위: 원)

연번	고객명	보증금액	보증일자	업종명	비고 (업체 수)
1	디앤비 브랜딩	30,000,000	2019-08-06	그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	3
2	한마당	20,000,000	2019-08-12	일반 서적 출판업	
3	더봄	30,000,000	2019-08-30	일반 서적 출판업	
4	6월 디자인 스튜디오	10,000,000	2020-09-22	시각 디자인업	3
5	레드캥거루	40,000,000	2020-11-23	광고물 문안, 도안, 설계 등 작성업	
6	더리치모션	30,000,000	2020-12-08	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	
7	티엘애드(TL AD)	40,000,000	2021-01-07	광고 대행업	15
8	불깡통	50,000,000	2021-01-18	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	
9	제일광고	20,000,000	2021-01-25	광고물 문안, 도안, 설계 등 작성업	
10	네프라이트소프트	15,000,000	2021-03-10	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	
11	큰꿈터	40,000,000	2021-03-17	일반 서적 출판업	
12	매드몬 미디어	30,000,000	2021-03-22	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	
13	영상기획 위드	40,000,000	2021-03-31	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	
14	아이룩	20,000,000	2021-04-02	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	
15	주앙(Juin)	20,000,000	2021-04-02	상업용 사진 촬영업	
16	제일영상비전	70,000,000	2021-04-13	영화,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	
17	현엔터테인먼트	50,000,000	2021-04-16	방송 프로그램 제작업	
18	주식회사 에스에스미디어	30,000,000	2021-06-08	만화 출판업	
19	주식회사 비비드이엔엠	40,000,000	2021-07-20	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	
20	이스트 영어	30,000,000	2021-07-29	일반 서적 출판업	
21	주식회사 아워컴퍼니	20,000,000	2021-12-14	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	
22	주식회사 느린생각	30,000,000	2022-03-16	일반 서적 출판업	1
23	와이(Y)미디어팩토리	30,000,000	2023-04-07	방송 프로그램 제작업	17
24	이엠비즈	100,000,000	2023-04-10	광고 대행업	
25	두블레 컴퍼니	20,000,000	2023-04-18	광고 대행업	
26	베러컴퍼니	50,000,000	2023-04-27	광고 대행업	
27	영상제작 프로덕션 제이오디 (JOD) 스튜디오	50,000,000	2023-05-04	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	
28	생각창고	20,000,000	2023-05-23	광고업	
29	코스모스글로벌 주식회사	50,000,000	2023-06-01	광고 대행업	
30	펄스(pulse)	35,000,000	2023-07-25	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	
31	피스필름	15,000,000	2023-08-10	영화,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	
32	라이브퍼널 주식회사	60,000,000	2023-08-18	광고물 문안, 도안, 설계 등 작성	

				업	
33	여기이슈	50,000,000	2023-08-23	영화,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	
34	주식회사 격	20,000,000	2023-09-26	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	
35	정말스튜디오 주식회사 (Jungmal Studio Inc.)	50,000,000	2023-09-27	광고업	
36	리더컴퍼니	30,000,000	2023-10-12	광고 대행업	
37	필름 더 와이	10,000,000	2023-10-20	영화,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	
38	발키리	30,000,000	2023-10-27	방송 프로그램 제작업	
39	투브로 엔터테인먼트	20,000,000	2023-11-03	방송 프로그램 제작업	
40	스튜디오S	30,000,000	2024-01-29	영화,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	6
41	라온커뮤니케이션	30,000,000	2024-02-23	광고 대행업	
42	스카이워커	20,000,000	2024-02-28	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	
43	주식회사 최고기획	35,000,000	2024-03-06	광고 대행업	
44	드림코퍼레이트	10,000,000	2024-03-15	광고 대행업	
45	피알아이	30,000,000	2024-09-23	광고 대행업	
46	고집 픽쳐스 (Go Jib Pictures)	70,000,000	2025-02-12	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	9
47	스튜디오더미	50,000,000	2025-02-14	상업용 사진 촬영업	
48	그리고필름	20,000,000	2025-02-26	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	
49	주식회사 마젠타컴퍼니	100,000,000	2025-03-11	방송 프로그램 제작업	
50	모멘텀랩	40,000,000	2025-03-13	영화,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	
51	플루타	100,000,000	2025-03-21	광고 대행업	
52	주식회사 세바드컴퍼니	30,000,000	2025-03-28	광고 대행업	
53	주식회사 에이알오컴퍼니	70,000,000	2025-07-15	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	
54	티니위미(TNwMM)	20,000,000	2025-09-30	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	
55	세이브준	10,000,000	2026-02-03	광고 대행업	11
56	스튜디오팔육 (StudioPalyug)	50,000,000	2026-03-12	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	
57	아크 컴퍼니 (ARC Company)	50,000,000	2026-03-13	광고 대행업	
58	스턴트리깅코리아	50,000,000	2026-03-16	영화,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	
59	스터디 싱크	50,000,000	2026-03-17	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	
60	애드업컴퍼니	20,000,000	2026-03-31	광고 대행업	
61	이야기 (yeeyaakee)	50,000,000	2026-05-08	광고 대행업	
62	하이홉	50,000,000	2026-07-21	광고 대행업	
63	문엔터테이먼트	40,000,000	2026-07-21	광고 대행업	
64	케이앤씨미디어	22,000,000	2026-07-30	광고 대행업	

붙임 「콘텐츠 특례보증」 3차 협약 지원현황(경기도)

○ **(지원규모)** : 642.75억원 (10배수)
○ **(협약기간)** : '19.06.20.~'27.06.19.
○ **(참여시군)** : 25개 (가평, 과천, 동두천, 안성, 양주, 오산 제외)
○ **(출연방법)** : 선출연 / 일시납
○ **(출연금액)** : 약 6,428백만원 ((시군) 약 3,214백만원, (道) 약 3,214백만원)

(기준일 : 2026.08.31., 건, 백만원)

시 군	지원건수	지원금액	지원규모	비 율	출연금
고양시	253	10,000	10,000	100.00%	500
광명시	22	1,000	1,000	100.00%	50
광주시	28	1,200	1,200	100.00%	60
구리시	22	600	600	100.00%	30
군포시	23	960	960	100.00%	48
김포시	52	1,917	1,920	99.84%	96
남양주시	**64**	**2,392**	**2,500**	**95.68%**	**125**
부천시	127	5,000	5,000	100.00%	250
성남시	229	10,833	12,400	87.36%	620
수원시	79	4,000	4,000	100.00%	200
시흥시	36	1,200	1,200	100.00%	60
안산시	34	1,700	1,700	100.00%	85
안양시	93	4,000	4,000	100.00%	200
양평군	18	600	600	100.00%	30
여주시	17	593	600	98.83%	30
연천군	1	10	400	2.50%	20
용인시	79	3,390	3,400	99.71%	170
의왕시	20	800	800	100.00%	40
의정부	41	1,440	1,495	96.32%	75
이천시	12	600	600	100.00%	30
파주시	131	5,400	5,400	100.00%	270
평택시	11	600	600	100.00%	30
포천시	13	600	600	100.00%	30
하남시	28	1,200	1,200	100.00%	60
화성시	49	2,100	2,100	100.00%	105
총합계	**1,482**	**62,135**	64,275	96.67%	3,214

붙임 콘텐츠 특례보증 지원업종

□ 콘텐츠산업 10개 분야, 40개 업종(2종 확대)

분야	순번	업종코드	업종명(중분류)	
출판	1	J 58111	교과서 및 학습서적 출판업	
	2	J 58113	일반 서적 출판업	
	3	J 58121	신문 발행업	
	4	J 58122	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	
	5	J 58123	정기 광고간행물 발행업	
	6	J 58190	기타 인쇄물 출판업	
만화	7	J 58112	만화 출판업	
애니메이션	8	J 59112	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	
영화	9	J 59111	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	
	10	J 59120	영화,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	
	11	J 59130	영화,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	
	12	C 18200	기록매체 복제업 (음반, 오디오물 복제 제외)	
방송	13	J 59114	방송 프로그램 제작업	
	14	J 60221	프로그램 공급업	
	15	J 60229	위성 및 기타 방송업	
음악	16	J 59201	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	
	17	J 59202	녹음시설 운영업	
게임	18	J 58211	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	
	19	J 58212	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	
	20	J 58219	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	
	21	C 33402	영상 게임기 제조업	
광고	22	J 59113	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	
	23	M 71310	광고 대행업	
	24	M 71391	옥외 및 전시 광고업	
	25	M 71393	광고물 문안, 도안, 설계 등 작성업	
	26	M 71399	그외 기타 광고 관련 서비스업	
	27	M 73302	상업용 사진 촬영업 (광고사진 관련)	
	28	M 75992	광고 이벤트(전시,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)	
캐릭터	29	M 73203	시각 디자인업	(캐릭터 관련)
	30	C 16292	장식용 목제품 제조업	
	31	C 33120	모조 귀금속 및 모조 장신용품 제조업	
	32	C 33401	인형 및 장난감 제조업	
	33	C 33409	기타 오락용품 제조업	
솔루션	34	J 58222	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(콘텐츠솔루션 관련)	
	35	J 60310	인터넷영상물 서비스업(영상물 제공 서비스업)	
	36	J 62010	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(콘텐츠솔루션, 온라인광고 관련)	
	37	J 63120	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	
	38	J 63910	뉴스 제공업	
	39	J 63991	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	
	40	J 63999	그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(콘텐츠솔루션 관련)	

※ 한국표준산업분류(KSIC) 기준 업종코드를 콘텐츠산업 특수 분류(10개 분야)에 매칭한 것임.
(C : 제조업 / J : 정보통신업 / M : 전문,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)

붙임 관계법령

☑「지방재정법」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☑「지역신용보증재단법」

제7조(기본재산)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(財源)으로 조성한다.

1.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
2. 금융회사등의 출연금
3. 기업의 출연금
4.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자의 출연금

② 정부는 재단의 기본재산 확충을 위하여 시·도에 보조할 수 있다.

③ 금융회사등은 그 대출금에 대하여 연 비율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재단 및 중앙회에 출연하여야 한다.

④ 제3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출연한 금액을 재단 및 중앙회에 배분하는 기준은 재단의 보증실적, 시·도 및 중앙회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⑤ 제3항의 대출금의 범위, 출연의 방법 및 시기, 그 밖에 출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☑「남양주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」

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남양주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문화콘텐츠

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 · 시행해야 한다.

② 시장은 콘텐츠 제작 및 창업 활성화 지원, 중소 콘텐츠사업자 특별지원, 콘텐츠산업의 해외진출 지원 등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.

③ 시장은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 · 시행할 때 장애인이 관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2항에 따라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.

제5조(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) ①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인프라 구축
2.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제작 · 마케팅, 첨단기술과 장비 지원
3.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창업 촉진 및 창업자 육성 지원
4. 신기술 콘텐츠 접목 관련 컨설팅
5. 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한 에듀테인먼트 개발
6.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전문인력 및 교육자 양성 및 고용 지원
7. 문화콘텐츠산업의 해외시장 진출, 국제교류 및 투자유치 지원
8. 문화콘텐츠 이해 증진을 위한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제공
9.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연구과제 공모, 국내외 문화콘텐츠 전시회 참가 및 홍보
10. 그 밖에 시장이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기관 및 법인 ·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기관 및 법인 · 단체 등에 행정적 ·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